

法律 <全文> 6章 42條 附則으로構成

現 行	改 正
<u>(新 設)</u>	<p>분하여 수립한다.</p> <p>第8條(住民등의 意見聽取) ①管理廳은 施設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聽證에 앞서 미리 당해 地域의 生民 및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지 아니하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生民 및 利害關係人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u>(新 設)</u>	<p>第9條(施設計劃의 내용) 施設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漁港의 開發 및 운영의 基本方向 2. 漁港施設의 立地·종류·규모 및 配置등 3. 年度別 投資計劃 4. 기타 管理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新 設)</u>	<p>第10條(施設計劃의 변경 등) ①管理廳은 施設計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聽證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漁港의 興亡이 변한 때에는 施設計劃의 变경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를 施設計劃의 变경시 반영하여야 한다.</p> <p>③第8條의 规定은 施設計劃의 变경에 이를準用한다.</p>
<u>(新 設)</u>	<p>第11條(施設計劃 수립등의 協議) ①管理廳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로 하지 아니하다.</p> <p>②市道知事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第2種 漁港의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水產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第1項本文의 规定에 의한 協議는 要청函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管理廳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3章 漁港의 開發</p> <p>第12條(事業施行者) ①漁港施設事業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规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管理廳이施行한다.</p> <p>②管理廳이 아닌 자가 漁港施設事業을 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事業을 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8條의 规定에 의한 施設計劃에 따라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水產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2條第2項第3號의 施設을 하고자 하는 事業者는例外로 한다.</p> <p>③管理廳은 第2項前段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와 施設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그로 하지 아니하다.</p> <p>④管理廳은 第2項後段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行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收하게 할 수 있다.</p> <p>⑤漁港施設事業은 施設計劃에 부합하여야 한다.</p> <p>第13條(扶助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规定에 의한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禁治產者 또는 限制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制以上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18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증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p>第14條(事業計劃의 變更 및 廢止 등) 事業者가 事業計劃書를 變更 또는 廢止하거나 그 行을 一時 停止하고자 할 때에는 水產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第15條(漁港修築事業의 移托) 事業者は 水產廳長의 承認을 얻어 漁港修築事業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移托할 수 있다.</p> <p>第16條(公共團體의 비용부담) ①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을 이용하는 등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公共團體로 하여금 漁港施設의 補修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補修 및 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한다.</p> <p>②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이 아닌 다른 工事 또는 漁港施設을 損壞·變形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漁港施設事業을 당해 工事의 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工事의 行者 또는 行爲者의 부담으로 한다.</p> <p>③第23條의 规定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事業의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p> <p>第17條(漁港修築事業의 보조) 水產廳長은 市道知事가 行하는 漁港施設事業 중 基本施設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豊算의 범위에서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第18條(法令 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사업을 行하는 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规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规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5條 및 第2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3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詐偽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期日内에 工事を着手하지 아니한 때 4. 建工의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p>②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사업을 行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 第13條第5號(第15條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任員敘任에 필요한 기간을 3月以上 주어야 한다.</p> <p>③管理廳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处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处분의 相對方 또는 그代理人</p>
<u>1. 指定期日内에 事業에着手하지 아니한 때</u>	
<u>2. 建工의 能力이 없다고 認定된 때</u>	
<u>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u>	

現 行	改 正
	<p>第1章 總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漁港의 指定과 施設 및 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漁港의 開發를 促進하고 그 利用과 管理의 適正을 圖謀하여 水產業發展에 寄與하게 힘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漁港」이라 함은 天然 또는 人工의 漁業根據地가 되는 水域 및 陸域과 漁港施設로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指定된 것을 말한다.</p> <p><u>(新 設)</u></p> <p>②이 法에서 「漁港施設」이라 함은 漁港區域에 있는 다음의 各施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本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外郭施設: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水堤·水門·閘門·護岸·堤防·突堤·胸壁等 外廓施設 繫留施設: 岸壁·物揚場·繫船浮標·繫船杭·棧橋·浮桟橋·船着場·船揚場等 繫留施設 水域施設: 航路·泊地 2. 機能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輸送施設: 鐵道·道路 및 橋梁 航行補助施設: 航路標識·信號施設 및 照明施設 漁港施設用地: 漁港施設의 土地 漁船魚具 保全施設: 漁船修理場·漁船機器修理場 및 漁具乾燥場 補給施設: 給水 및 紙油施設 3. 通信施設: 航路標識·信號施設 4. 水產物處理加工施設: 荷役機械·野積場·製水·冷凍·冷藏施設·加工工場·販賣場 및 水產物倉庫 5. 漁業用 通信施設: 陸上無線電話 및 漁業氣象信號施設 <p><u>(新 設)</u></p> <p>③이 法에서 「漁港修築事業」이라 함은 第8條의 规定에 依한 漁港의 調査와 基本計劃 및 整備計劃에 의하여 行하는 漁港施設의 新築·増築·改築·補修·除去 또는 漁港區域의 土地의 剥離·土砂의 流入등을 防止하는 事業을 말한다.</p> <p>第5條(漁港의 種類) 漁港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種漁港: 利用範圍가 全國의 漁業의 根據地 2. 第2種漁港: 利用範圍가 地方의 漁業의 根據地 3. 第3種漁港: 島嶼·僻地에 所在하여 漁場의 開發, 漁船의 待避에 필요한 漁港 <p>第6條(漁港의 管理) 第1種 및 第3種漁港은 水產廳長이, 第2種漁港은 道知事が 각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維持 管理하여야 한다.</p> <p>第3條(事業所) ①漁港의 修築事業 및 管理業務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水產廳長이 水產廳에 属下에 漁港修築事業所(이하 「事業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前項의 规定에 依한 事業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7條(漁港審議會) ①漁港의 指定과 漁港修築事業에 관하여 水產廳長과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水產廳과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이하 「道」라 한다)에 漁港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p> <p>②前項의 规定에 依한 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4條(漁港의 指定 및 解除) ①漁港은 第7條의 规定에 依한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漁港의 名稱·種類 및 區域을 定하여 漁港을 指定한다.</p> <p>②水產廳長은 前項의 规定에 依한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이하 「道」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p> <p>③水產廳長은 漁港이 事情의 變更或其他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道知事의 意見과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指定한 내용을 變更하거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p> <p>第5條(漁港政策審議會) ①漁港의 指定과 漁港修築事業에 관하여 水產廳長과 直轄市長·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管理廳所屬하여 漁港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p> <p>②審議會의 委員은 漁港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중에서 水產廳長 또는 直轄市長·道知事가 委嘱하여 水產廳所屬하여 審議會의 委員은 15人이나, 直轄市長·道知事所屬하여 審議會의 委員은 10人이나로 한다.</p> <p>③水產廳所屬하여 審議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所屬하여 審議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정한다.</p> <p>第6條(漁港의 지정·변경 및 解除) ①漁港은 管理廳이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漁港의 명칭·種類·位置 및 區域를 정하여 지정한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依한 漁港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p> <p>③管理廳은 漁港의 興亡이 变하거나 기타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第1項의 规定에 依한 지정내용을 变경하거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p> <p>④管理廳은 第1項 및 第3項의 规定에 依하여 漁港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第1種 또는 第3種漁港은 당해 漁港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第2種漁港은 당해 漁港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區長(自治區의 區廳長)을 訴하였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管理廳은 漁港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區域에 이미 다른 法律에 依하여 土地 또는 水面의 이용에 관한 地區·地域·區域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⑥管理廳은 漁港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⑦管理廳은 漁港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2章 漁港施設計劃</p> <p>第8條(施設計劃) ①水產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調査를 實施하고 施設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p> <p>②前項의 规定에 依한 施設計劃은 이를 基本計劃과 整備計劃으로 分한다.</p>

現行	改正
<p>第19條(財產의 登記) ①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는 施設計劃에 따라 漁港施設事業에서 생긴 土地 또는 工作物을 最終竣工日로부터 1년내에 登記하여야 한다.</p>	<p>정한다. 第26條(財產의 登記) 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또는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중 第26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漁港施設을 제외한 土地 또는 施設에 대하여 竣工日부터 2년내에 登記하여야 한다.</p>
<p>第22條(漁港臺帳)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을 補置하여야 한다.</p>	<p>第27章 漁港의 관리 및 사용</p>
<p>第23條(漁港施設의 位置變更 등) 道知事는 漁港施設의 位置를 變更하거나 貨貨하거나 또는 搬去하고자 하는 때에는 水產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削除)</p>
<p>(新設)</p>	<p>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 등) ①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水產部令 또는 直轄市·道의 條例(第2種 漁港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期間과範圍에서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p> <p>②管理廳이 基本施設區域 or 機能施設區域의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의 許可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目的에 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p> <p>③第1項本文의 规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④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漁港機能保全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⑤漁港施設의 사용 및 占用에 관하여 이 法에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農林水產部令 또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정한다.</p>
<p>(新設)</p>	<p>第29條(使用許可등의 取消) ①管理廳은 第28條第1項本文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著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리를 取消하거나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占用의 权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訸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1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수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p>②第18條第3項의 规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p>
<p>第20條(使用料의 徵收) ①水產廳長은 大統領令으로 道知事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漁港의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30條(使用料등의 徵收) ①水產廳長은 農林水產部令, 市·道知事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9條의 规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使用料 또는 占用料는 國稅 또는 地方稅·瀝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规定에 의한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瀝納處分 또는 地方稅瀝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p>	<p>第31條(使用料등의 귀속)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國家의 收入으로, 第2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p>
<p>(新設)</p>	<p>(削除)</p>
<p>第10條(費用分擔) 漁港施設을 다른 用途에 利用하는 때에는 그 漁港施設의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管理機關과 利用者가 協議하여 分擔하게 할 수 있다.</p>	<p>第32條(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漁港區域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漁港施設을 損壊하여 漁港의 機能을 해하는 행위 2. 漁港施設의 構造를 改造하거나 位置를 변경하는 행위 3. 融船을 放置하는 행위 4. 漁港區域을 埋立하거나 挖鑿하는 행위 5. 漁港區域에 廉價物을 放置하는 행위 6. 廉價物을 指定場所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p>(新設)</p>	<p>第33條(原狀回復 등) ①管理廳은 漁港機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32條의 规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의 规定에 따라 原狀回復 또는 제거를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第32條의 规定을 위반한 者를 住所不明등의 사유로 알 수 없거나 漁港의 機能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廉船·廉磚·廉瓦等의 제거를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新設)</p>	<p>第5章 補則</p>
<p>第34條(権利·義務의 移轉) 이 法의 规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権利 또는 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移轉할 수 있다.</p>	<p>第34條(権利·義務의 移轉) 이 法의 规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権利 또는 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移轉할 수 있다.</p>
<p>第25條(權限의 委任) 水產廳長은 이 法의 规定에 의한 그 權限의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道知事은 市長 또는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35條(權限의 有無) ①水產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市·道知事는 그 權限의 일부를 水產廳長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p>
<p>第26條(協議 등)</p>	<p>第36條(協議)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에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工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에서 鐵業法·水產業法·公有水面埋立法·鐵業權等의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 別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漁港區域에서 이 造에 規定한 以外의 事業을 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管掌하는 主務官廳은 미리 水產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11條第4項의 规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의 수립 및 变更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第11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許可·認可·免許·승인·同意·協議등(이하 "許可·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認可등의 許可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规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實施計劃의 許可 2.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3. 公有水面埋立法 第7條의 规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2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協議 또는 승인 4. 水道法 第27條의 规定에 의한 專用water의 許可 5. 下水道法 第13條의 规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6. 河川法 第27條의 规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 同法 第28條의 规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水產業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한 工事施行 승인

漁港法改正

現行	改正
(新設)	<p>에게 의견을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첫분의相對方 또는 그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住所不明등으로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第19條(公益을 위한 차분) ①管理廳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漁港의 與件이 변하거나 漁港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公共의 危害를輕減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公共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p>②第18條第3項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p> <p>第20條(보고·監督) ①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사업을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施行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事業場에서 關係文書 또는 工事內容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権限을 나누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p> <p>第21條(土地·水面에의出入과 사용등) ①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水面등에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水面등을 材料의 積置場, 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 기타 廉磚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日時와 場所를 미리 그 土地나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나水面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기타 廉磚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③해뜨기전과 해진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の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出入할 수 없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水面에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権限을 나누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第20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p> <p>第22條(非常災害時の土地등의 사용)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施行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施設事業의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土石·竹木·運搬具其他 物件를 일시 사용하거나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新設)</p>
(新設)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水面의 使用으로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第21條(非常災害時の土地등의 사용)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은 天災地變 其他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管理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其他의 工作物을 一時 使用하거나 工作物其他 障害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竹木·運搬具其他 物件를 一時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新設)</p>
(新設)	<p>第18條(竣工検査) 事業者が 漁港修築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遲滯 없이 水產廳長의 竣工検査를 받어야 한다.</p> <p>(新設)</p>
(新設)	<p>에게 의견을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첫분의相對方 또는 그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住所不明등으로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第19條(公益을 위한 차분) ①管理廳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施設物의 改築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漁港의 與件이 변하거나 漁港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公共의 危害를輕減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公共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p>②第18條第3項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p> <p>第20條(보고·監督) ①management廳은 非management廳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사업을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施行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②management廳은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事業場에서 關係文書 또는 工事內容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権限을 나누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p> <p>第21條(土地·水面에의出入과 사용등) ①management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水面등에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水面등을 材料의 積置場, 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 기타 廉磚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日時와 場所를 미리 그 土地나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나水面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기타 廉磚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③해뜨기전과 해진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の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出入할 수 없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水面에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権限을 나누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第20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p> <p>第22條(非常災害時の土地등의 사용)management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施行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施設事業의施行 또는 漁港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土石·竹木·運搬具其他 物件를 일시 사용하거나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申請할 수 있다.</p> <p>第23條(損失補償 등) ①management廳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施行하는 者는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 당해 損失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management廳이決定한 금액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損失을 입은 者가 受領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院所에 提出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자급 또는 共同過失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申请할 수 있다.</p> <p>第24條(竣工検査) ①非management廳이 漁港施設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management廳에 竣工報告書를 제출하여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検査의 申請은 management廳은 檢查 결과 당해 사업이 許可한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竣工検査單證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検査單證을 교부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으로造成 또는 調整된 土地나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management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検査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公有水面理立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 河川法 第30條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 <p>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management廳이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인하여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施設은 第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p> <p>②非management廳은 第1項本义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用 軟地를 제외한 殘餘土地에 대하여 그가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management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 및施設에 대하여 總事業費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management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의 價額을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非management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產業聯合組合(中央會) 및 魚村契가 아닌 著에게는 基本施設區域或 機構施設區域를 사용·收益하게 할 수 없다.</p> <p>④非management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는 期間은 20년을 超過할 수 없다.</p> <p>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management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 價額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p>

現 行	改 正	現 行	改 正
	<p>4. 第2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5. 第24條第3項本文의規定에 위반하여 廉工検査單證을 교부받기 전에 土地나 施設을 사용하거나 同條同項但書의規定에 위반하여 廉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한 者</p> <p>第42條(兩罰規定) 法人の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代理人·使用人·기타 종업원이 그法人 또는 개인의業務에 관하여 第9條 내지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削除)</p>		<p>8. 道路法第34條의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第40條의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p> <p>9. 自然公園法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公園佔用 및 사용의 許可와 同法第50條의規定에 의한 公園管理廳과의 協議</p> <p>10. 農地의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第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第6條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協議 또는 승인</p> <p>11. 國軍시설보호법第7조의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p> <p>12. 海軍基地法第6條의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p> <p>13. 軍用航空基地法第16條 및 第20條의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p> <p>第38條(漁港協會의設立) ①漁港의開發을 위한 技術의 計划과 漁港에 관한 調査·研究 및 張報 등을 目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漁港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p> <p>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協會의 定款記載事項과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第28條(兩罰規定) 法人の代表者 또는 法人이나自然人の代理人其他使用人이 그法人 또는自然人の業務에 관하여前條의規定에該當하는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自然人에 대하여도罰金刑을 科한다.			
第25條(漁港以外의港灣) 第4條의規定에 의한 渔港以外(港灣法에의한指定港은除外한다)의港灣을目的으로修築하는 경우에는 第9條乃至第11條및第27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29條(準用規定) 渔港에관하여 이 法에規定한 것을 例外하고는 渔港法을準用한다.			
第30條(施行日) 이 法은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新設)	附 則	(新設)	第6章 罰則
①(施行日) 이 法은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39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實施한 渔港調査 및 渔港修築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實施된 것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3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新設)			2. 정당한 사유없이 第3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新設)			第40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만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新設)			1. 第12條第2項前段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渔港施設事業을 施行한 者
(新設)			2. 第22條의規定에 의한非常災害시 管理廳의措置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新設)			3. 第28條第1項本文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渔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한 者
(新設)			4. 計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2項前段 또는 第20條第1項本文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新設)			5. 정당한 사유없이 第32條第3號내지第6號의 1의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者로서 第3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原狀回復命令 또는 除去命令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新設)			第41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新設)			1.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승인없이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한 者
			2. 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廳의처분이나命令에 위반한 者
			3.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廳의命令를 위반한 者

많은 應募바랍니다

제6회 漁港寫眞公募

회로시니코피의 예방을 받고 의견을 교환, 14일에는 고속터미널 3층에서 열린 전국어민주계자협의회가 주최한 팔도어민동민후계자 장터개설행사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5월 18일 수산청회의실에서 농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술대회에 참석.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5월 18일 수산청의실에서 국가능력 사회보장정책 등에 관한 학술대회에 참석. ▲조남숙 삼부토건주식 회장은 5월 10일 21

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1백일 중간점검보고 회의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 1일 수산청을 방문하고 현안업무에 대해 협의. 14일에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국가자율성 이동통신 개통식에 참석. 10월에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주최한 통일강연에 참석. ▲양성후 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 1일 제1회 경제사절단 해단식에 참석. ▲조남숙 삼부토건주식 회장은 5월 10일 21



李羲秀 수산청장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수산분과 협의회를 주재

10

八

이사
▶

주수

원장

한글

10

5

11

1

四
卷之三

1
2

주소변경

△ 서산주협 김홍양 △ 경기
△ 지역회부지회장 김정현 △
△ 지역회(정년대기) △ 장경
△ (정년대기)